

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6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정재웅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소외계층'을 '취약계층'으로 함(안 제1조, 제2조 및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외계층”을 “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소외계층”을 “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소외계층”을 “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<u>소외계층</u>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약계층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“체육복지”란 체육 <u>소외계층</u>인 저소득 노인·아동·청소년·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<u>취약계층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체육 <u>소외계층</u>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책무) ----- ----- <u>취약계층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